

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 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
신고인	성명	생년월일	
	주소(주민등록지 주소)		
	전화번호(또는 휴대전화번호)		
결정 내용	결정번호		
	결정내용 [] 전세사기피해자 [] 법 제2조제4호나목 [] 법 제2조제4호다목		
	전세사기피해주택 소재지		
신고사항	년 월 일 임차보증금 원을 변제받았음		
	(총 임차보증금: 원, 잔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: 원)		

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았음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
공공주택사업자

귀하

첨부서류	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